SEIN

NEWSLETTER 787

Feb 03, 2023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간 연장 등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관세법」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4호, '20.07.06)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o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기준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 필요
- o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을 통해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1.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제4조)
 -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
 - *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 o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연장(7일 → 15일)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제6조)
 - 적극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기준액 상향 조정 (30만원 → 100만원)
 - ㅇ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수기(手記) 기록 대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3. 손실보상 지급기한 명확화(제6조)

- o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명시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기한)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4. 손실보상금 지급실태 관리 강화(제12조, 제13조)

ㅇ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세관장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및 환수 관련 규정 명시

Ⅲ.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o 담 당 자 : 박용찬 사무관(042-481-7923), 황혜진 관세행정관(042-481-7836)

o 제출기한: 2023, 02, 2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liebao83@korea.kr

- 팩스: 042-481-781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_입안계획서

[붙임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_개정전문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강은지 팀장 T 02-6011-3056 E ejkang@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